



2012 ISSUE PAPER

여성정책, 새로운 30년을 위한 제언

수행과제명 | 사회발전을 향한 여성통합30년(1983~2012)의 성과와
전망(II): 여성정책 30년의 성과점검 및 여성정책 선진화
방안 탐색

과제책임자 | 양애경 연구위원



한국여성정책연구원
Korean Women's Development Institute

여성정책, 새로운 30년을 위한 제언

수행과제명 ▣ 사회발전을 향한 여성통합 30년(1983~2012)의 성과와 전망(Ⅱ): 여성정책 30년의 성과점검 및 여성정책 선진화 방안 탐색

과제책임자 ▣ 양 애 경 연구위원
☎ Tel: 02-3156-7152
☎ e-mail: agyang@kwdimail.re.kr

요약

본 연구는 사회발전에 여성을 통합하는 노력을 국가차원에서 모색하는 움직임이 본격화하기 시작한 지난 30년(1983~2012)간의 여성정책 흐름과 성과를 점검한 것임. 이를 위해 여성정책 추진체계의 특징적 변화에 기준하여 지난 30년을 시기구분하고 각 시기별로 국내외적 시대배경 및 여성계 동향 등을 중심으로 한 여성정책 환경과 당해 시기 여성정책의 주요 동향 및 성과 등을 살펴보되, 특히 의회나 언론처럼 여성정책에 관련된 주요 부문과의 연계에도 유의하여 이른바 공시적 및 통시적 분석을 시도하였음.

연구결과에 의거하여, 향후 세대의 여성정책 발전과제로서 소통하는 여성정책으로 국민적 수용성 확보, 여성정책 추진체계의 안정화와 효율화, 남성참여형 여성정책의제 개발, 여성정책 경험의 국제적 공유, 여성정책 아카이브의 체계적 구축, 여성정책사 관련 연구 강화 등을 제안하였음.

1 배경 및 문제점

- 여성정책의 목적은 남성 중심의 사회에서 차별적 제도와 관행으로 인하여 소외되고 억압된 여성의 권익을 보호하고 궁극적으로 성평등 사회를 실현하는 것으로, 정책을 추진할 때 성평등 가치에 대한 사회적 동의를 형성하는 작업이 매우 중요함. 우리의 경우, 타 영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짧은 정책 역사 속에서 성평등 가치에 대한 충분한 성찰이나 논의의 과정이 부족하였으며, 그 결과 여성정책의 많은 발전에도 불구하고 아직 성평등에 대한 오해와 저항이 높고 젠더 격차는 매우 심각한 수준에 머물고 있음.
- 성차별은 그 어떤 차별보다 더 오래 역사 속에서 공고히 구조화 되었고 더 광범위하게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성불평등을 해결하는 것은 모든 종류의 불평등을 해결하는 데 가장 근본적인 작업이라고 볼 수 있음. 성평등 국가로 잘 알려진 스웨덴의 경우 일찍이 성차별을 개선하기 위해 축적한 경험이 인종차별을 비롯한 다른 종류의 불평등을 다루는데 도움된 것으로 분석되는 것도 바로 그런 이치임.
- 역사적으로 여성주의는 소외된 이들의 존엄을 회복하고 평등하고 정의로운 사회질서를 형성하는데 관심을 두며, 무엇보다 ‘관계’와 ‘관계’를 유지시키는 ‘돌봄’ 가치를 중시함. 우리사회는 정치, 경제, 교육 등 대부분의 영역에서의 관계가 지나치게 위계적이며, 경쟁, 강인함이나 통제, 지배와 같은 남성적 원리가 우선 순위를 가지는 반면, 돌봄과 육성, 협력과 공존 등과 같은 여성적 가치와 원리는 간과되기 쉬움.
- 사회전반에 여성적 가치를 균형되게 통합하지 않는 한, 삶의 질이 제고될 것을 기대하기 어려움. 바야흐로 파트너십 사회로의 전환이 필요하며, 이것이 바로 향후 30년의 여성정책의 비전이 될 수 있을 것임.

- 이상의 사항들에 유념하여 향후 세대의 여성정책 발전을 위해 제기 될 필요가 있는 과제들을 다음과 같이 제안하고자 함.

2 정책제언

제안1) 소통하는 여성정책으로 국민적 수용성 확보

- 국가적 발전계획에 여성발전 부문이 포함된 이래 지난 30년간 우리의 여성정책 성과는 일견 괄목할 만 함. 일례로 1985년 여성정책심의위원회가 본원에 의뢰하여 작성되어 이후 남녀평등을 위한 법·제도적 인프라 마련에 중요한 가이드라인으로 활용되었던 ‘남녀차별개선지침’의 81개항 내용은 그로부터 거의 30년이 흐른 현재 시점에서 그 이행성과를 보건대 적어도 외견상으로는 성과가 없는 항목이 없을 정도임.
- 이는 당연하게도 여성정책에 관련되는 제반 영역에서의 남녀평등을 실현하기 위한 법·제도적 장치가 그만큼 충실하게 마련되어 왔던 데 기인할 것임. 1980년대의 남녀고용평등법(1987)을 필두로 1990년대부터 2000년대 초반 사이에는 이른바 여성인권 3대 법률로 지칭되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1994),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과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1997),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과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2004)이 제정되었음. 또한 여성의 대표성 제고를 위한 여성할당제 채택 등을 담은 「정당법」(2002)과 「정치자금에 관한 법률」(2002)이 개정되었고, 호주제폐지를 가져온 「민법개정안」 통과(2005)도 이루어졌음. 그리고 성 주류화(Gender Mainstreaming)의 도구라고 할 수 있는 성별통계, 성인지예산, 성별분석평가를 가능하게 하기 위한 「통계법」

(2007) 개정과 「국가재정법」(2006) 및 「성별영향분석평가법」(2011)이 제정되기에 이르렀음. 실로 지난 30년 동안 주요 정책분야에 있어 여성이 관련되는 수많은 법률이 제·개정된 것임.

- 문제는 이같은 법·제도적 장치들이 오늘의 시점에서 과연 성평등한 한국사회를 담보하고 있는 것일까 하는 점. 마치 성평등한 사회인 듯 보이나 사실 그렇지 못한, 이같은 착시가 빚어내고 있는 더욱 심각한 현실은 과거에 비해 성평등에 대한 저항과 거부감의 수위가 한층 높아지고 있다는 점.
- 본 연구의 일환으로 수행된 지난 30년간의 여성정책 관련 언론보도 현황을 통해서도 이같은 흐름의 일단을 포착할 수 있었는데, 여성정책 30년을 시기구분하여 각 시기별로 여성정책 관련보도의 논조를 살핀 결과 대통령직속 여성특별위원회를 정점으로 긍정적 논조는 크게 줄어든 반면에 부정적 논조는 여성정책기구 설립기 이래 지속적으로 늘어나는 경향을 보여줌(그림 1). 물론 언론의 이같은 보도경향을 곧 여성정책에 대한 사회전반의 인식을 가늠하는 척도로 간주할 수는 없겠으나, 적어도 사회적 분위기를 반영하는 것이라 할 수는 있을 것임. 최근 여성계에서 우려하고 있는 이른바 역풍(back-lash)의 현실을 확인할 수 있는 대목이기도 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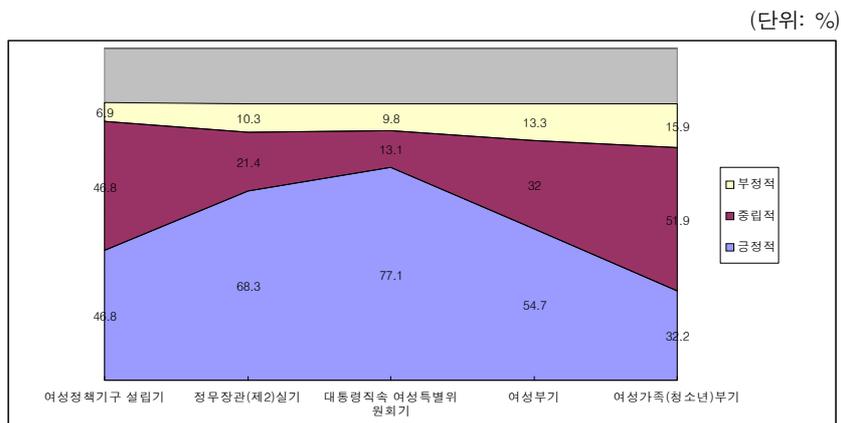


그림 1 | 시기별 여성정책 관련 언론보도의 논조 비교

- 성평등에 대한 저항과 착시가 일시적 현상인지 혹은 향후 더욱 거세질 반발의 예고인지 여부를 가릴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주체는 다름 아닌 여성을 포함한 일반 국민이라는 점에서, 국가정책으로서 여성정책에 대한 국민적 수용성이 절실히 요구될 수 밖에 없는 시점임. 일반 국민들로부터 거부되지 않는 정책이란 곧 소통 가능한 정책을 의미함. 소통하는 여성정책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국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정책의제들이 개발되어야 할 것이며 한편으로 이를 올바르게 알려내는 일 또한 못지않게 중요함. 이점에서 여성정책 추진에 관여된 주요 부문들, 행정부처는 물론이고 여성정책 전담연구기관인 KWDI, 양성평등교육 전담기구인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등 공공부문의 책무성이 특히 강조되어야 할 것임.
- 지난 30년을 달려오는 동안 갖추어진 각 분야의 성평등 관련 법·제도적 장치가 실효화됨으로써 법과 현실의 간극을 메우는 것, 이로써 국민적 수용성을 높이고 성평등에 대한 저항과 착시현상마저도 극복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야말로 향후 세대 즉, 새로운 30년을 준비하는 여성정책이 풀지 않으면 안되는 첫 번째 과제임.

제안2) 여성정책 추진체계의 안정화와 효율화

- 여성정책전담기구는 특히 대통령선거와 같은 중대 선거 국면에 대선공약으로 제시되어 구체화되는 경향이 강했는데 이에 따라 여성정책추진기구는 새로운 정부가 들어설 때마다 정부기구조정의 우선순위에 들어가게 되어 타 부처보다 조직의 안정성이 떨어진다고 볼 수 있음. 이는 여성정책에 대한 인식 및 여성정책추진기구가 국가와 사회발전을 이루기 위해 반드시 필요하고 중요한 것이라는 인식보다 시혜적이고 부수적인 정치적 타협의 선물정도로 인식하는 것에서 비롯된 바 큼.
- 이제는 조직의 안정성과 지속성을 가지고 그 어느 때보다 소통능력과 위기관리능력을 가진 효율적인 여성정책기구가 필요한 시점임. 여성발전을 통한 사회통합의 역사는 우리나라와 같이 국가주도형

사회에서는 여성정책추진기구가 핵심적 역할을 해왔고 앞으로도 일정시기까지는 필요하다고 보여지기 때문임.

- 지금까지의 여성정책 추진기구를 보면 준입법권과 준사법권 및 집행권은 여성정책의 실효성을 담보하기 위해 매우 중요한 것임이 입증되었음. 여성정책 담당기구와 관련 위원회의 존재는 관련 법안제출과 발의를 활발하게 하는 계기가 된다는 점에서도 여성정책 행정부처는 반드시 존속할 필요가 있음. 다만 지금보다 보완된 부처형태로의 기구개편이 현실적으로 고려될 만함. 기구가 현재와 같이 동등한 위치의 부처 형태로 있을 시 부처간 조직의 규모나 부처서열상 영향력의 면에서 강력하게 정책을 추진하는 데 어려움이 있기 때문임. 또한 대통령직속여성특별위원회의 경험을 살려 각 6개부처의 여성정책담당관실을 더 확대·부활, 설치하여 여성정책 추진 및 점검이 효과적으로 집행되고 연계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여성정책의 실효성을 담보할 필요가 있음.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여성정책의 확산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해 여성정책을 전담할 수 있는 여성정책담당관제도의 부활이 필요함. 특히 그동안 여성정책 추진이 중앙기구를 중심으로 이루어져 지방과의 연계가 약했던 측면을 보완강화하게 해야 할 것임.

제안3) 남성참여형 여성정책 의제 개발

- 최근 EU국가 등에서 남성을 여성(성평등)정책의 대상으로 포함해야 한다는 논의가 있음. 국내에서도 여성정책 관련 각종 세미나에서 초보적인 수준이지만 남성참여형 여성정책 의제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음. 이러한 논의는 대개 남성의제개발에 관한 논의, 남성의 육아참여 정책개발에 관한 논의, 그리고 남성의 자발적 정책참여 등 세 가지 유형으로 나눌 수 있음.

[성평등정책의 파트너로서 남성 대상 정책의제 개발]

남성대상의 여성정책 의제 개발은 여성정책이 지속가능한 정책이

되기 위해서는 성평등가치 실현에 대한 남성의 인식수준을 높이고 이러한 가치 실현에 남성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하기 때문에 필요하다는 것임. 여기서 여성정책은 기존의 여성정책의 개념이 확대된 것임. 즉, 성평등가치를 실현한다는 의미에서의 성평등정책임.

● 이러한 논의는 기존의 여성정책의 추진 방법에 대한 반성에서 나온 것이기도 함. 기존의 여성정책은 그간 주류에서 배제되었던 여성들을 주류에 참여시키기 위해 여성만을 대상으로 하는 의제를 개발하여 추진해온 경향이 강함. 반면에 남성들은 의식교육의 대상이 되거나 일부 지지자들만이 보조적으로 참가하는 수준이었음. 그 결과 여성정책은 여성의 여성을 위한 여성에 의한 정책으로 받아들여지는 경향이 있었음. 이는 여성과 남성이 사는 미래지향적 평등사회로 나가는 데 한계가 있을 수 밖에 없음. 따라서 남성의 여성정책 나아가 성평등정책에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서는 남성의 제 개발이 필요함. 다시 말해 남성을 성평등 정책의 파트너로 상정하는 것임.

● 그렇다면 남성의제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 여성의제에 대해 젠더적 관점을 도입하듯이 남성의 여러 문제에 대해서도 젠더적 관점을 도입하여 의제를 개발할 수 있을 것. 덴마크의 경우는 젠더적 분석에 근거하여 소년들의 교육정책, 남성의 건강문제, 그리고 유치원 아동 대상의 성평등교육, 남성 출산휴가 문제 등을 남성정책과제로 개발할 것을 제안하고 있음.

[남성의 육아 참여 유도 정책 개발]

일가정 양립 문제와 관련해서 남성의 육아에 대한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는 정책이 필요하다는 것. 이는 주로 ‘일가정 양립 문제’의 해결 방안의 하나로 제시되고 있음. 즉, 기업과 남성이 일가정 양립 문제에 적극 개입함으로써 이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것. 구체적으로 남성의 육아 참여 관련 사업을 추진하는 사업주에 대해 지원을 강화하고, 정부는 남성의 육아 참여에 대한 홍보를 활발하게 추진한다는 방안임. 일본의 경우, 후생노동성 산하의 21세기 직업재단을

통해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다양한 일가정 양립 지원 사업을 실시하고 있음. 남성사원들의 육아 참여를 위한 실질적이고도 구체적인 내용이 담긴 가이드북을 발간 보급하고 있기도 함.

- 또한 후생노동성은 남성의 육아를 장려하는 ‘이쿠멘 사이트’ 개설 함. ‘이쿠멘(育Men)’이라는 말은 육아를 즐기고, 자신도 성장하는 남성을 일컫는 말. 또는 장래 그런 인생을 보내고자 하는 남성을 일컫는 말이기도 함. 『이쿠멘프로젝트』란 이러한 제도개선과 함께 사회전체가 남성이 좀 더 적극적으로 육아에 관여할 수 있는 커다란 움직임의 불러일으키기 위해 2010년 6월에 발족함.
- 최근 한국에서도 저출산 대책의 일환으로 보건복지부에서 ‘100인의 아버지단’을 운영하는 등의 방법으로 남성의 육아참여를 홍보하고 있으나, 초보적인 수준임. 실질적이고 체계적인 남성 육아참여 프로그램이 개발될 필요가 있음.

[남성들이 자발적으로 여성정책 영역으로 들어오는 것]

남성들이 자발적으로 여성정책의 영역에 들어와 참여하는 것을 가리킴. 독일에서는 남성들이 아버지가 되는 것(fatherhood)에 대한 중요한 지식을 제공하고 아버지와 자녀간의 결속을 강화하고 태어나면서부터 아버지인 남자들을 위한 양성평등 실현의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음. 이러한 프로그램은 가족교육(family education) 차원에서 추진되는 것. 이에 대한 풀뿌리 조직으로는 베를린의 ‘아버지센터’, 함부르크의 아버지 센터 ‘아버지 함부르크’, ‘남성을 위한 프랑크푸르트 정보 및 카운슬링센터’ 등이 있음.

- 이들이 남성들을 위한 조직을 만들고 프로그램을 실시하는 이유는 가정과 관련된 모든 일들이 여성에게만 속해 있다는 일반의 고정관념에서 대부분의 부모교육이 아버지들이 일하고 있는 주중의 낮시간대에 실시되고, 참가자 대부분이 여성으로 남성들이 의도적이건 무의식적이건 배제되어 있어 흔히 아버지는 일만하고 집에는 없는 ‘나쁜’아버지로 간주되는 현실때문임. 이런 고정관념을 극복하고 아버지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음. 가

령 자녀들을 잘 가르칠 수 있는 방법과 젓먹이 및 유아를 다루는 방법, 자녀들과의 놀이에 관한 조언, 다른 아버지와 그들의 아이들과 만나서 일상생활에서 함께 시간을 보내는 방법 등 일과 가정생활에서 균형을 잡을 수 있게 하기 위한 조언과 자세한 설명 등의 예를 들 수 있음. 베를린의 아버지 센터의 프로그램의 경우, 프로그램 성공의 핵심은 남성의 자발적인 참여임.

제안4) 여성정책 경험의 국제적 공유

- 우리의 지난 30년간 여성정책 발전과정은 상당부분 국제적 여성동향에 힘입은 바 컸다 해도 과언이 아님. KWDI나 여성정책심의위원회가 설치되기에 이른 과정이 그랬고 여성발전기본법 제정과정 또한 그랬음. 특히 유엔여성차별철폐협약에의 가입은 우리나라 여성정책이 지금의 위치에 오기까지 고비고비마다 참으로 중요한 영향을 주었음. 가입 당사국으로서 협약사항의 이행 책무야말로 가장 효과적인 설득수단이었기 때문임.
- 어쨌든 유엔여성차별철폐협약에 가입한지도 30년이 돼가는동안 그 사이 우리나라의 국제적 위상은 크게 달라졌음. OECD/DAC 가입을 기해, 과거 국제사회로부터 원조를 받던 수원국에서 이제 다른 국가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공여국으로 변신한 것은 이같은 변화를 특히 상징적으로 보여줌. 이를 계기로 많은 분야에서 우리나라의 발전경험을 국제적으로 공유하고자 하는 움직임이 있거니와, 이 과정에서 양성평등 관점을 견지토록 권고받음으로써 정책관계자의 성평등성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는 또 하나의 단초가 마련되기도 했음.
- 한편으로 유엔내 여성 여성관련기구를 통합하여 2011년에 새롭게 출범한 유엔여성에 우리나라가 집행이사국으로 참여한 데 이어, 2012년에는 의장국 역할을 수행하는 등 국제여성계에서 우리나라의 위상 또한 크게 높아졌음. 이러한 배경 하에서 우리의 여성정책 발전경험을 국제적으로 공유하는 방안에 관한 논의를 진작할 필요가 있음.

- 현재 유엔 여성은 여성에 대한 폭력 금지를 비롯해 평화와 안보/리더십과 참여/경제적 역량 강화/국가기획 및 예산/인권/2015년 이후의 어젠더/새천년 개발 목표 등 총 8개 분야의 여성의제와 관련하여 전 세계의 여성현실에 유의하면서 지속적으로 관심을 두고 접근 및 조치방법을 모색해오고 있는데, 우리의 여성정책 경험에 비추어 문제해결책 모색에 지원 가능한 측면이 적지 않음. 말하자면 여성정책 경험의 국제적 공유인 셈. 가령 여성에 대한 폭력 금지를 위해 지역 사회 역량강화와 지방 자치 단체와의 공조를 통하여 도시 공공 지역의 성폭력과 폭행을 줄이고자 하는데 초점을 두고 있는 ‘여성에 대한 폭력 없는 안전한 도시에 관한 국제 프로그램’은, 현재 여성가족부주관 하에 지자체들의 참여 열기가 매우 높은 ‘여성친화 도시’ 사업의 경험을 함께 공유할 수 있을 것.

국가기획 및 예산과 같은 유엔 여성 의제의 경우, 성별영향평가 제도나 성인지예산 및 성인지통계 등 이른바 성주류화 추진을 위한 실행도구를 꾸준히 정비해온 우리의 경험도 함께 나뉘볼 만 함. 특히 2011년에 제정된 성별영향분석평가법은 성주류화 추진을 위한 성별영향평가제도를 더욱 안정적이고 실효성있게 추진하기 위한 법적 장치로, 전 세계적으로 유례없음. 유엔여성의 주도하에 성주류화가 국제적으로 강조되고 있음을 고려하면, 그동안 우리가 추진해오던 일련의 경험들을 국제적으로 공유할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도 할 수 있겠음.

- 실제로 중국이나 베트남 등 국가에서는 우리의 성별영향평가 제도 시행에 큰 관심을 보이고, 교류를 희망하기도 함. 이를 위해 정례화된 교류채널로 자리잡은 <한중여성지도자포럼>을 활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임. 마찬가지로 2010년에 양성평등전략을 수립하고 성주류화에 관심을 보이지만 아직 사정이 여의치 않은 베트남과도 성별영향평가 제도 시행의 경험을 공유할 수 있을 것. 다만 이를 위해서는 우선 ‘한국-베트남 여성포럼’과 같은 교류채널부터 마련하는 것이 향후의 지속적인 협력과 교류를 담보할 수 있을 것.

- 한편 유엔 여성의 주요 여성의제에 포함된 새천년개발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형태의 국가적 지원도 요청되는데, 여성가족부가 베트남에 여성직업훈련센터 설치를 지원한 일이나 KWDI에서 실시 중인 ODA사업도 이러한 맥락에서 비롯된 것이라 하겠음. 다만 이같은 노력들이 보다 실효성있게 추진되게 할 필요는 여전함.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국가간 상호 이해가 전제되어야 할 것이며, 여성현안에 대한 상호간 이해 역시 지극히 당연함. 그래야만 진정으로 여성을 매개로 한 국가간 협력이 가능할 것이며, 여성정책을 통한 국제적 공헌 또한 가능할 것이기 때문임.
- 이러한 때 CEDAW가 각국의 이행보고서를 심의하고 그 결과를 해당 국가에 제시할 때의 권고내용은 일정한 시각으로 심의가 이루어진 점에서 국가간 여성협력 방안 논의에 참고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예컨대 2007년 시점에서 우리나라와 베트남 정부에 대해 CEDAW가 권고한 내용을 보면, 우리의 경우는 법·제도적 장치와 현실의 차이를 드러내고 있는 셈인데 비해, 베트남에서는 기본적인 인프라 미비는 물론 이를 준비하기 위한 선행조치 역시 미흡함을 보여줌. 따라서 양국간 여성현실에 대한 이같은 사전이해를 바탕으로 국가간 여성교류채널을 통해 여성정책 경험을 상호 공유해 나간다면, 이것이 바로 여성정책을 통한 국제공헌에 다름 아닐 것임.

제안5) 여성정책 아카이브의 체계적 구축

- 1983년부터 2012년까지의 여성정책 30년 성과를 살펴보고자 한 본 연구를 진행함에 있어 자주 봉착했던 문제는 바로 관련자료를 찾기 어려운 경우가 종종 있었다는 점. 불과 30년 안에 진행되었던 일임에도 관련자료를 찾기 힘든 데에는 실제 자료가 남아있지 않는 경우이거나 또는 어디엔가 보존되어 있을 자료를 찾아내기 힘든 경우이거나 둘 중 하나일 것임. 앞으로의 여성정책을 준비함에 있어 지난 시대 여성정책의 경험은 대단히 소중한.

- 정책이 채택되는 과정은 일련의 정치적 협상과정임. 아무리 좋은 정책 아이디어나 아이템을 개발한다고 해도 이 과정에 성공적으로 개입하지 못하면 충실한 정책의 도입을 보장하기 어려움. 이같은 정책과정에 효과적으로 개입하기 위해서는 그에 대한 노하우가 축적되어야 하는데, 이를 위해서는 지난 시기 주요 여성정책의 형성 과정에 대한 기록이 필요함. 따라서 주요 여성관련 제도가 제안되고 채택되기에 이르기까지의 전 과정에 대한 면밀한 분석과 기록을 시작해야 할 것임.
- 이를 위해 이제부터라도 시작하지 않으면 안되는 일이 바로 여성정책 아카이브의 구축임. 한국여성개발원의 발족으로 시작된 현대 한국여성정책의 발전과정에 관한 역사적 자료 수집과 보존을 위한 아카이브즈가 구축될 필요성이 절실함.
- 아카이브즈(Archives)는 대개 세가지로 정의될 수 있음. 첫째는 대개 개인 및 모든 기관이나 단체에서 생산한 기록물에 대해 연구보존의 가치가 있는 자료를 선별, 평가, 그리고 보존하는 것을 책임지고, 보존자료를 이용할 수 있도록 처리하는 행위나 작업일정을 의미함. 둘째는 이러한 자료 기록 보존을 책임진 부서를 의미함. 셋째는 기록과 자료를 보존한 건물이나 장소를 의미함. 여성정책에 대한 자료 아카이브 구축을 제안할 때 아카이브의 정의는 첫번째 정의를 의미함. 여기서 기록은 낱장 서류, 필름, 사진, 소리나 영상기록테이프, 전자파일 등을 의미함.
- 최근에는 디지털 중심의 정보환경의 변화에 따라 다양한 형태의 비디지털 자료를 수집 발굴하여 디지털 자료화함으로써 효율적, 체계적으로 자료를 관리하는 디지털 아카이브의 구축이 활성화되고 있음. 또한 아카이브에서는 단순히 수집, 보존, 관리하는 것에서 나아가 이러한 내용을 소장하고 있는 기록의 콘텐츠화, 일반대중 대상 교육도 실시하고 공개하는 경우도 늘고 있음.
- 한국사 일반의 데이터베이스외에 한국의 여성사에 관한 아카이브는, 일본군위안부피해자e-역사관(<http://www.hermuseum.go.kr>), 한국여성사

지식정보시스템(<http://www.womenshistory.re.kr:7070>), 여성가족부의 여성사전시관(<http://eherstory.mogef.go.kr>) 구술자료 구축사업, KWDI e-여성정책 아카이브(비공개) 등을 들 수 있음. 이 정도로는 한국의 여성정책, 나아가 여성의 역사에 대한 사료를 보존하고 관리하며, 나아가 일반에 공개하는 일은 매우 미흡함. 체계적인 아카이브 구축이 필요하며, 우선 현재 여성정책연구원의 e-여성정책아카이브를 확대 구축하는 것으로부터 시작해야 할 것임. 또한 여성사전시관이 현재 여성계에서 기대하는대로 국립여성사박물관으로 확대 발전된다면, 박물관의 한축으로 여성정책, 나아가 여성사 자료 아카이브 구축이 체계적으로 추진되는 것도 바람직함.

제안6) 여성정책사 관련 연구 강화

- 일반적으로 여성사 서술의 단계를 첫째, 명사들의 역사 서술단계 둘째, 여성들이 역사발전에 기여한 내용을 연구하여 서술하는 공헌사 단계, 셋째, 주체적인 관점에서 여성의 역사적 역할을 규명하여 가부장적 권력의 작동에 대해서 연구하는 여성시각의 역사연구 단계 등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 이렇게 볼 때 한국의 여성정책사는 첫 번째 단계에도 진입하지 못했다고 평가할 수 있음. 그간의 여성정책 발전에 공헌한 많은 여성인물, 여성단체, 나아가 남성협조자들의 활동에 대한 역사적 관점의 기록(구술사)이나 연구가 매우 부진하기 때문임. 여성정책도 전체 한국여성사의 분야사라는 관점에서 역사적 관점의 연구가 필요한 시점임. 이를 위해 전술한 바와 같은 아카이브 구축은 물론, 특히 구술 수집이라든가 인물탐구, 연표나 백서 발간 등에 대한 관계기관의 인식이 우선적으로 제고될 필요가 절실함.
- 구술 수집
구술 수집은 공식적인 자료에서 볼 수 없는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내용을 담을 수 있음. 과거에는 기록을 갖지 못한 층의 구술을 담기

위해 구술 녹취를 하였다면 이제는 구술 녹취만이 답을 수 있는 내용이 있음을 잘 알게 되었기에, 구술 녹취는 모든 근현대 연구나 자료작업에서 매우 중요한 작업으로 자리잡게 되었음.

사실 여성정책을 담당하고 있는 공무원들이 모두 한결같이 여성 문제에 대한 인식을 공유하고 있다고 보기란 어려운 일임. 따라서 이들 공무원이나 정치가들이 여성들의 요구에 응하여 어떠한 생각으로 당시의 시대적 요구에 응하게 되었는지부터 시작하여, 여성정책의 기획·실행 등에서 중요한 위치에 있었던 여성들에 대한 조사에 이르기까지 여성정책을 추진해 가는 시기마다 어떻게 대응하였는가를 살펴볼 수 있다면 상당히 유용한 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임. 순간 순간의 상황과 감동 등을 전달하는 데 한계가 있는 문헌자료와 달리 구술자료는 매우 입체적이고 생생한 내용을 독자들에게 전달할 수 있기 때문임. 이렇게 수집된 구술자료를 여성정책 아카이브에 탑재한다면 여성정책사 연구의 기초자료로 의미있게 활용될 수 있을 것임.

● 인물 탐구

구술 수집은 그 자체로도 자료화 하여 국민에게 공개함으로써 공감을 불러일으킬 수 있지만, 이러한 자료는 인물탐구나 당시 상황에 대한 연구로 이어져 나아갈 때 그 의미를 증폭할 수 있게 될 것임. 현재 여성정책에 대한 연구는 한국여성정책연구원에서 항상적 작업으로 하고 있는 데 반해, 여성정책과 관련한 인물탐구는 그동안 거의 전무한 실정임. 정책연구란 결국 인간이 하는 것이고 여성정책을 담당하였던 이들에 대한 연구를 통해 지금까지 해 온 작업들에 대해 내용과 관점, 철학을 점검하여 방향성을 잡아나갈 수 있다고 본다면, 인물 탐구는 여성정책사 연구의 중요 분야라 하지 않을 수 없음.

● 연표와 백서

지난 30년간의 여성정책을 둘러싼 주·객관적 조건들이나 동향들을 점검한 본 연구를 수행함에 있어, 가장 큰 애로사항은 시간적 공간

적 좌표가 제대로 마련되어 있지 않다는 점이었음. 일례로, 여성관련 연표라는 것은 하나 하나는 간단한 것이지만 시대의 흐름과 여성정책 등 전체적 추이를 한눈에 볼 수 있는 것으로 연구 작업에서는 기본적인 것임. 그러나 현재 여성백서도 공간(公刊)되지 않고 있는 데다, 다른 연표에서는 여성에 대한 내용을 중요하게 기록하지 않아 여성정책연구에 있어 제대로 된 연표 하나 제시하기 어려울 정도였음. 이같은 사정을 고려하여 본 연구를 통해 비록 제한된 시간과 자료에 의한 것이긴 하지만 별책으로 연표를 제작하였음. 추후 연표 제작에 필요한 일반적인 조건들을 반영하여 보완한다면 개인 연구만이 아니라 전시회나 발표회 등에서 다양한 용도로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함.

그런데 연표는 단순한 정보를 전달할 뿐이고 좀 더 계통을 잡아 과거 KWDI나 여성정책담당 정부부처에서 수행했던 것처럼 여성백서 간행 작업의 전통을 이어가는 것이 연구자와 일반인에게도 매우 필요함.

3 기대효과

- 여성정책사 연구의 기초자료 제공
- 연구자, 공무원 및 기타 여성정책 담당자들의 연구사업활동 지원
- 여성정책의 수립·집행과정에서 실효성 및 정책활용 가능성 등 제고

주관부처 : 여성가족부

관계부처 : 국가기록원, 고용노동부, 보건복지부